

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096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일자 : 2017년 11월 27일

제안자 : 도시안전건설위원장

1. 수정이유

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위원회 구성 시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단서규정을 추가함.
(안 제22조제2항).

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2조제2항 중 “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구성한다.”를 “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붙임)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22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, 외부위원 위촉시에는 <u>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</u></p>	<p>제22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구성한다.</u></p>	<p>제22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

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
수정한다.

제22조제2항 중 “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”를 “「양성평등기본
법」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
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같은 항 단서에 따
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
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
하다.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2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, 외부위원 위촉시에는 <u>성별을 고려하여</u> 구성한다.</p>	<p>제22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.....<u>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 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</u> <u>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</u> <u>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같은 항 단서에</u> <u>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</u> <u>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</u> <u>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</u> <u>러하지 아니하다.</u></p>